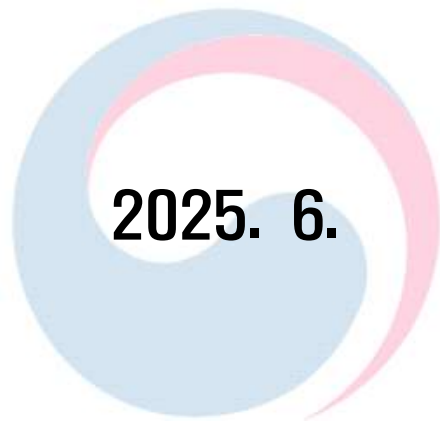


청렴은 **등**족
부패는 **거**절

√ 해당 사례가 '22년도~'24년도 권익위에 제출한 '부패취약분야 개선 과제'에 해당 여부	예 ■	아니오 □	
√ 과제 제출 년도('24년도) 청렴노력도 평가 ②번	'22년 □	'23년 □	'24년 ■
√ '22년도~'24년도 미평가기관에 해당(자율과제 제출)	예 □	아니오 ■	

특허청 반부패 시책 추진 사례



특 허 청
감 사 담 당 관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신고체계 강화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최근 특허청 내 공직자의 금품수수 등 부패행위에 대한 조사가 기존 신고시스템이 아닌 진정서 등에 의한 제보로 이루어짐

- ▶ 특허청은 공직자 반부패·청렴의식 고취 노력을 통해 10년 연속 '부패사건 발생 0건'이었음

[특허청 부패사건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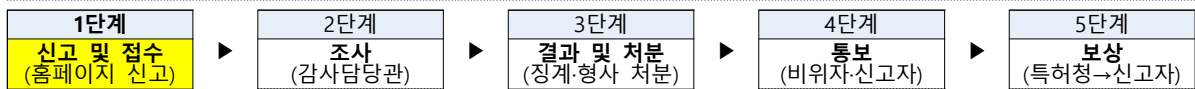
(12) 2건→(13) 0건→(14) 0건→(15) 0건→(16) 0건→(17) 0건→(18) 0건→(19) 0건→(20) 0건→(21) 0건→(22) 0건

- 감사원에서 고위직의 부패행위(금품수수) 적발 및 파면 조치('23.12.)

- 특허청 자체조사에서 용역 위탁 관련 부패행위 적발·감사원 이첩 및 처분 진행 중('24.04.)

- ▶ 최근 지속적인 부패행위 발생에 따라 기관의 전체적인 부패행위 처리체계 개선이 시급

(BEFORE) 부패행위 신고 및 처리 체계



(필요성) 기존 부패사건 신고·접수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 검토 필요

2 반부패 시책 추진내용

- (익명 신고시스템 신설) 익명성 강화 및 신고 편의성이 강화된 외부 전문업체가 운영하는 익명 신고시스템 도입

개선1 "접수" 체계 취약분야 개선

- (기존체계) 특허청 홈페이지 및 신문고의 공직비리신고란를 통해 신고를 진행하는 경우, 익명신고라 하더라도 신고자 본인인증 확인 절차 진행
- (부정요인) 신고자에 대한 본인 확인 절차로 인한 신분 노출 우려로 인해 인사 상 불이익 등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 우려로 신고 포기 가능성 상존

▶ (개선내용) 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비밀 유지(익명성) 및 신고 대상 확대

- (익명성 강화) 독립된 외부 전문업체(민간)를 통한 '익명신고 헬프라인(Help-line)' 구축·운영으로 신고자의 익명성 강화* 추진

* 신고내용 암호화, IP추적 방지 등 신고자 신분 노출 우려 철저히 차단

- (대상 확대) 기존 특허청 대상의 신고시스템을 산하 기관까지 확대하여 지식재산권 분야의 청렴성 제고 및 관리체계 강화, 대국민 대상 지식재산 정책 신뢰성 제고

개선2 “신고” 체계의 취약분야 개선

- (기존체계) 특허청 홈페이지 및 신문고의 **공직비리신고센터에 접속하여 신고 진행**
- (부정요인) 매번 신고 시 특허청 홈페이지 또는 신문고에 접속하여야만 하는 **접근 편의성이 부족**, **신고자와** 해당 신고 내용에 대한 **의견교환 불가하여 조사 진행시 사건 파악의 어려움 상존**

▶ (개선내용) 부패행위 신고에 대한 편의성 강화 및 신고자와의 소통 강화

- (편의성 강화) QR코드를 통한 신고체계 도입으로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시간·장소 제약 탈피 등 신고 편의성 및 접근성 강화
- (소통 강화) 시스템에 신고자와 조사 진행에 필요한 내용을 문의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 신고 내용에 대한 신뢰성 제고 및 조사의 편의성 증대 추진

(AFTER) 부패행위 신고 및 처리 체계

1단계 (신고) [신고자]	2단계 (접수) [익명시스템]	3단계 (조사) [감사담당관]	4단계 (결과) [신고자]	5단계 (포상) [감사담당관]
특허청 홈페이지 접속 및 QR코드를 통한 간편 익명 신고 (편의성 강화)	외부기관에서 익명으로 감사담당관 시스템 전달 (익명성 강화)	시스템을 통해 익명 신고자와 수시 의견을 교환 조사 효율성 제고 (양방향 소통 강화)	신고자는 본인이 설정한 임시 비밀번호로 처리결과 확인 (보안성 강화)	익명신고시스템을 통해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전달 (정당한 보상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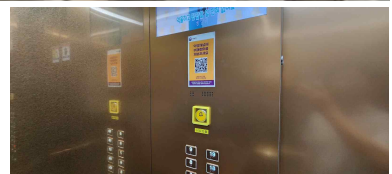
3 추진과정 중 장애요인 및 극복방안

- 신규 시스템 운영 관심 부족을 대내외 적극 홍보를 통해 극복

장애요인 (무관심) 다수의 신고 경로가 既存재하여 신규 시스템 도입·운영에 대한 관심 부족

극복방안 (적극홍보) 기존 시스템보다 강화된 신고자의 익명성 및 신고 편의성에 대한 적극적 홍보 추진

(오프라인) 본청 및 산하기관 홍보 배너 설치하고, 시스템 QR코드 스티커 배포 및 부착



(온라인) 본청 및 산하기관에 협조 요청 공문서 발송 및 내부망 공지, 언론보도 배포

제목 특허청 반부패 익명신고체널 운영 알림

1. 감사담당관실에서는 반부패·청렴 조적환경 조성 및 부정부패행위 신고 활성화 추진을 위해 '25년 2월부터 아래와 같이 '반부패 익명신고체널'을 새롭게 도입·운영합니다.

제목 특허청 '반부패 익명신고체널' 운영 알림

등록일 2025-02-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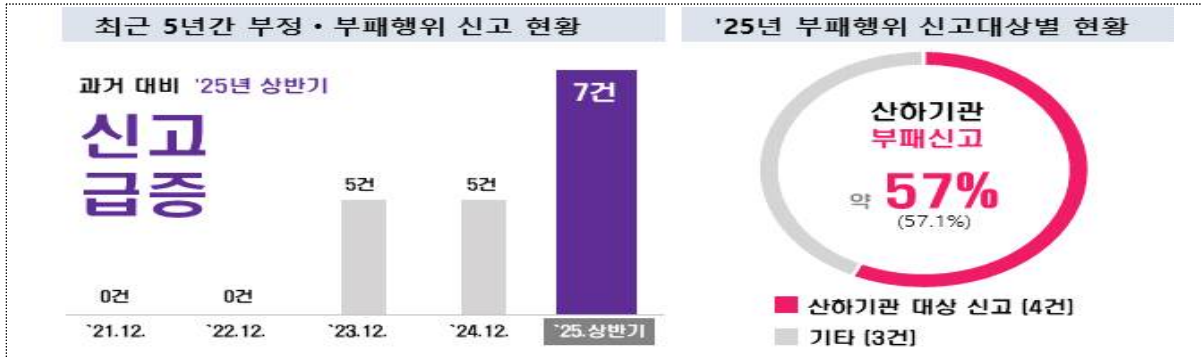
등록자 서울빈

▶ 온·오프라인으로 특허청·산하기관에 전방위적 홍보 활동 추진으로 장애요인 극복

4 주요 추진성과 및 파급효과

- (부패예방) 익명성 기반 신고 편의성, 익명성, 소통 강화로 부패 사건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를 통해 기관의 청렴도 제고에 기여

- ▶ (성과) 부정부패 익명신고시스템 정식운영기간*부터 적극홍보를 통해 신고활성화 촉진
 - * 익명신고시스템 도입검토 완료('24년) 및 시범운영기간을 거쳐 '25.2.1.부터 정식 운영
 - 특히 산하 공공기관 및 민간에도 신고창구를 확대하여 산하 공공기관 조기통제 실현



- ▶ (효과) 부정부패 익명신고시스템 활성화로 인해 보안성·익명성·편리성·양방향성 증대
 - 따라서 신고자의 신고 부담감 등으로 인한 신고 포기 가능성에 대한 문제 경감

BEFORE	AFTER	효과
신고자의 신고절차에서 본인인증 절차 발생에 따라 신고자가 신분보호 우려	인증절차 없이 익명으로 간편 신고	보안성
신고자의 정보를 감사담당관실에서 인지가능성으로 신고부담감 존재	외부 전문기관으로부터 철저한 익명 관리	익명성
PC를 통해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신고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QR코드로 간편 신고	편리성
신고내용의 처리절차에서 불명확한 부분에 대해 추가소통 기회 부족	시스템을 통해 신고자와 감사 담당자가 실시간 수시 의견 교환 및 추가자료 제출 가능	양방향성

5 우수사례 선정 사유

- (일원화된 관리체계) 익명신고시스템의 신고대상을 산하기관으로 확대하여, 감독기관의 원루프(One-roof) 시스템을 구축, 반부패 청렴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여 효율성 제고
- (예산 효율성) 적은 예산 투입(년 390만원)으로도 부정부패에 대한 특허청 및 산하기관 직원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부정부패 사건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 기대